

2015년도 클린사업장 신청 안내

(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

□ 사업참여 대상

○ 위험성 평가 참여사업장

- 참여신청시 위험성평가표(유해·위험요인 및 개선대책 등), 실시규정(구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함.

○ 고용부·공단·민간위탁기관의 감독·점검 및 기술지도 실시 사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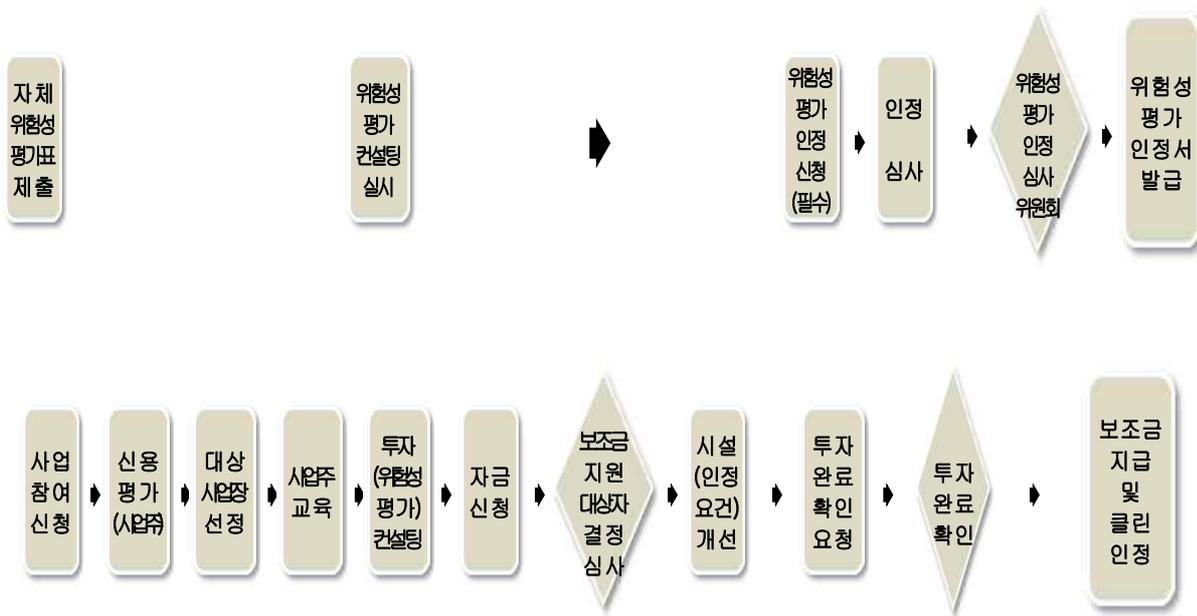
- 참여신청시 위험성평가표에 해당하는 기술지도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함.

□ 지원금액

구 분	클린사업장 (재)인정
지원 한도액	사업장당 2,000만원
	※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 - 고용증가 사업장(고용인원 1명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지원 비율	10명미만
	10명이상
	소요비용의 70%
	소요비용의 50%

- * 재인정사업장(지원일로부터 3년경과)의 경우 지원한도액에서 기지원금액을 제외한 금액내에서 설비, 또는 공정이 증설된 경우 변경된 부분에 한해서 지원)
- * 적재대, 높낮이조절작업대는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소요비용의 최대 50% 지원, 품목당 최대 1,000만원 지원
- * 재인정사업장(지원일로부터 3년경과)의 경우 지원한도액에서 기지원금액을 제외한 금액내에서 설비, 또는 공정이 증설된 경우 변경된 부분에 한해서 지원)

□ 지원절차



□ 신청방법

1. 방문 및 우편 접수

- 불임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신청서』 또는 『클린인정 사업장 재인정 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지역본부 해당 부서로 방문/우편 접수
- 제조업 : 산업안전팀(담당 : 정용재 과장[전화 : 051-520-0531])
- 서비스업 : 문화협력팀(담당 : 정현주 과장[전화 : 051-520-0596])

2. 온라인 접수

- 클린사업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참여신청서 작성
※ 클린사업 홈페이지 : <http://clean.kosha.or.kr/main.do> (참여신청서 작성하기)

□ 제출서류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신청서』 또는 『클린인정 사업장 재인정 평가 신청서』
-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
- 사업주가 서명한 위험성평가표 및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실시계획서)
* 위험성평가표는 가능한 KRAS를 통한 평가표 제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 클린사업 우선지원 대상선정 기준 관련 증빙서류
* 위험성평가 인정서 사본(기 인증 받은 사업장에 한함.)
*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인정 확인서(재해예방활동 인정서) 사본
*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필증
* 취약계층 근로자 관련 서류
 - 외국인, 고령(만 55세 이상), 산재장애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증명할 수 있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명부, 산재장애 등급 관련 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확인 등 증빙서류
 - ※ 증빙서류 미첨부 및 미제출 시 우선지원 선정 접수 미부여

□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서 양식은 반드시 첨부 양식을 사용바랍니다.
2. 신청서가 중복 제출된 경우 나중에 제출된 신청서는 자동 반려됩니다.
3. 참여신청서 중간부분과 하단의 사업주 및 담당자 '서명'란에는 서명이나 도장날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4. 신청서 중간에 “기술지도 대상” 항목 관련하여, 안전보건공단·고용노동부·민간위탁기관의 “기술지도 대상”으로 기술지도를 받았거나 기술지도를 실시한다고 공문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위험성평가표에 해당하는 기술지도 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5. 위험성평가는 다음의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실시하고, [붙임 1] 또는 [붙임 2]의 위험성평가표 제출
6.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실시계획서)는 [붙임 3]을 참고하여 작성

붙임 1

KRAS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을 통한 위험성평가표 제출

- 인터넷 주소 : <http://kras.kosha.or.kr/>
- 회원 가입 실시 및 사업주 로그인
- KRAS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화면에서 입력, 위험성평가 진행



- 위험성평가 따라하기 화면에서 다음순서로 클릭 입력



※ 입력하기 전 위험성평가안내의 **가상체험하기**를 실시하면 보다 쉽게 이해 및 평가 가능합니다.

○ 평가결과보기에서 인쇄 후 결재하여 클린사업 참여신청서에 첨부하여 신청

위험성 평가 실시

위험성 평가 안내

- 위험성 평가 실시
- 1. 사전 준비
- 2. 유해 위험요인 파악
- 3. 위험성 측정
- 4. 위험성 결정
- 5.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 평가결과 보기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평가결과 보기

내 컴퓨터에서의 안전준수 위험성 평가 지원 시스템이 탑재 됩니다. 첫음으로 > 위험성 평가 실시 > 평가결과 보기

안전조치 수준 ? 현재 단계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분야	전체조치	현재조치	안전수준
작업환경 요인	1	0	0
기계적 요인	13	2	0.15
작업특성 요인	2	0	0
전기적 요인	1	0	0
총계	17	2	0.12

대표 부장 담당

공정명	위험성 평가				평가자 (리더및팀원)							
	유해 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상태 및 조치	현재위험성			감소 대책	개선일	완료일	담당자	비고
평가일시	원인	유해 위험 요인	법적기준	가능성	중대성 (빈도)	위험성						
2014.01.17	기계(설비)의 낙하, 비례, 전폭, 붕괴, 진도위험	제품입상 및 야적작업 시 지게차 사용으로 불안정한 운송수단	안전보건규칙제189조 [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조영시설 설치 불량	1	2	있낮음	후크해지장치 설치	2014-01-01	2014-01-25	홍길동	김사표

기계적 요인
장착(물결)적 요인

인쇄

붙임2

KRAS에 입력하지 않은 위험성평가표 제출

-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위험성 평가표를 작성 후 결재하여 클린신청서에 첨부하여 참여신청(위험성평가표, 위험성 추정 및 위험관리 기준)

위험성 평가표(예시)

담당	부장	대표

공정명		위험성평가				평가자				
평가일시						(리더및팀원)				
작업 내용	유해위험요인	현재상 태 및 조치	현재위험성			감소 대책	개선후 위험성 (추정)	개선 예정일	담당자	비 고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 성					

위험성 추정·결정 및 위험관리를 위한 자체 기준(예시)

○ 빈도 및 강도 설정 기준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			위험의 중대성(강도)		
구분	가능성	기준	구분	중대성	기준
상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6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 가능성이 높음 	대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을 초과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취급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중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6 시간인 경우 발생 가능성이 있음 	중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명, 절단 등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이상인 경우
하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시간 미만인 경우 발생 가능성이 낮음 	소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미만인 경우

○ 위험성 결정 및 위험성 수준에 따른 관리기준

3*3 위험성 추정기준					5*4 위험성 추정기준				
		중대성(강도)			중대성(강도)				
		대(3)	중(2)	소(1)	최대(4)	대(3)	중(2)	소(1)	
가능성(빈도)	상(2)	높음(9)	높음(6)	보통(3)	최상(5)	매우높음(20)	높음(15)	약간높음(10)	낮음(5)
	중(2)	높음(6)	보통(4)	낮음(2)	상(4)	매우높음(16)	약간높음(12)	보통(8)	낮음(4)
	하(1)	보통(3)	낮음(2)	낮음(1)	중(3)	약간높음(12)	약간높음(9)	낮음(6)	매우낮음(3)
					하(2)	보통(8)	낮음(6)	낮음(4)	매우낮음(2)
					최하(1)	낮음(4)	매우낮음(3)	매우낮음(2)	매우낮음(1)

위험성 수준		관리기준	
1~2	낮음	현재상태유지	
3~4	보통	개선	
6~9	높음	즉시개선	

위험성수준		관리기준	
1~3	매우낮음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4~6	낮음	안전정보 및 주기적 안전보건교육의 제공이 필요한 위험	
8	보통	유해위험의 표지부착, 작업절차서 표기 등 관리적 대책이 필요한 위험	
9~12	약간높음	정비,보수기간전에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해야 할 위험	
15	높음	긴급 임시안전보건대책을 세운 후 작업 실시하고 정비,보수기간 전에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해야 할 위험	
16~20	매우높음	즉시 작업중지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개선을 실행해야 하는 위험)	

위험성 평가표 【작성 사례】

공정명		위험성평가				평가자 (리더및팀원)							
평가일시		..											
작업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상태 및 조치	현재위험성			감소대책	개선일	완료일	담당자	비고
	분류	원인	유해위험 요인			법적기준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원재료 입고	기계적 요인	충돌위험 부분	화물용리프트 비상정지버튼이 파손되어 있어 비상시 신속한 전원차단이 불가하여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제 192조 [비상정지장치]	미흡	3	2	6(높음)	화물용리프트 비상정지버튼 수리	2013-02-28		홍길동	
원재료 입고	기계적 요인	기계(설비)의 낙하, 비래, 전복, 붕괴, 전도위험 부분	화물용리프트 안전문이 열린상태로 운반구 작동으로 작업자 끼임사고 위험	안전보건규칙제 155조 [운반구의 정지위치]	연동장치사용중	1	2	2(낮음)					
원재료 입고	작업특성 요인	중량물 취급 작업	작업자 중량을 취급에 따른 오프 등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	안전보건규칙제 666조 [작업자제 등]	인력운반	2	3	6(높음)	이동대차 등 운반보조기구 도입사용	2013-02-27		홍길동	
조립	기계적 요인	협착위험 부분(감김,끼임)	탐핑기 상부 동력전달부 노출상태로 작업중 작업자 신체 및 옷자락이 말려드는 사고 위험	안전보건규칙제 87조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미흡	2	3	6(높음)	동력전달부 커버설치	2013-02-28		홍길동	
조립	전기적 요인	감전(안전전압초과)	드릴기 모터부에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어 작업자 신체 접촉으로 인한 감전사고 위험	안전보건규칙제 301조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미흡	2	3	6(높음)	노출된 충전부 절연조치	2013-03-01		홍길동	

붙임 3

실시규정(실시계획서) 작성방법

- 인터넷 주소 : <http://kras.kosha.or.kr/>
- 게시판→자료실→“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게시(번호 2)”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받아 사업장 실정에 맞게 수정·작성한 뒤 제출

